

인 천 구 월 2 공 공 주 택 지 구
기 후 변 화 영 향 평 가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2024. 8.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1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
1.4 사업개요	2
1.5 사업의 기대효과	6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결과	 7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 개요	7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8
2.2.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8
2.2.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1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 1호선 등이 위치하며, 사업지구 반경 2km 이내에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경찰서, 인천종합터미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교통과 공공 서비스 여건이 우수함
- 사업지구는 인천구월, 인천서창2, 인천논현2 등 기존 공공주택 지구와 연계한 양질의 주거지를 추가 공급하고, 상업·문화 기능을 연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인천 남동권 복합자족 중심도시를 조성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항목 대해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1.2.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지구 면적은 2,200,586㎡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 사업	○ 면적 : 2,200,586㎡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도시의 개발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본 사업	○ 면적 : 2,200,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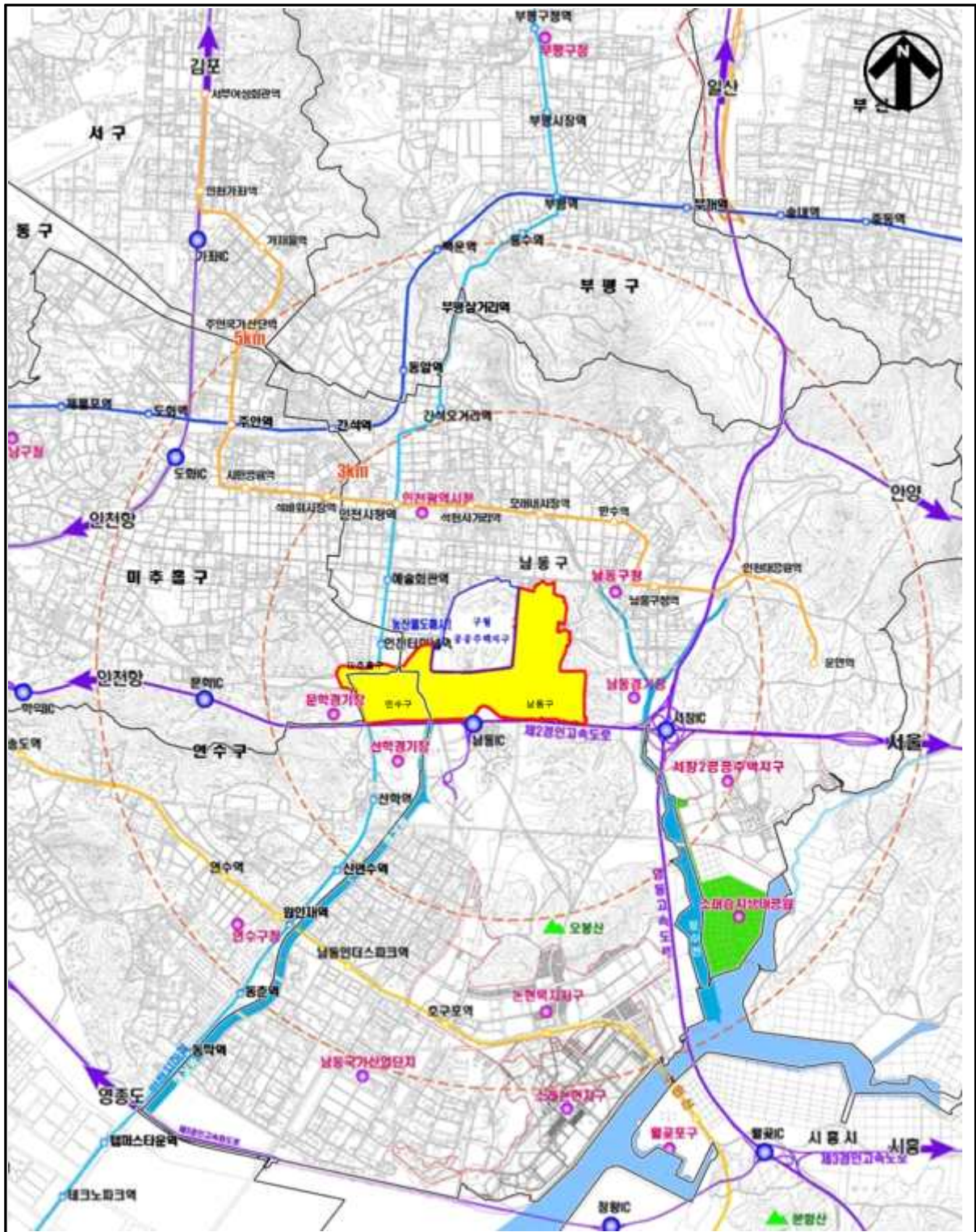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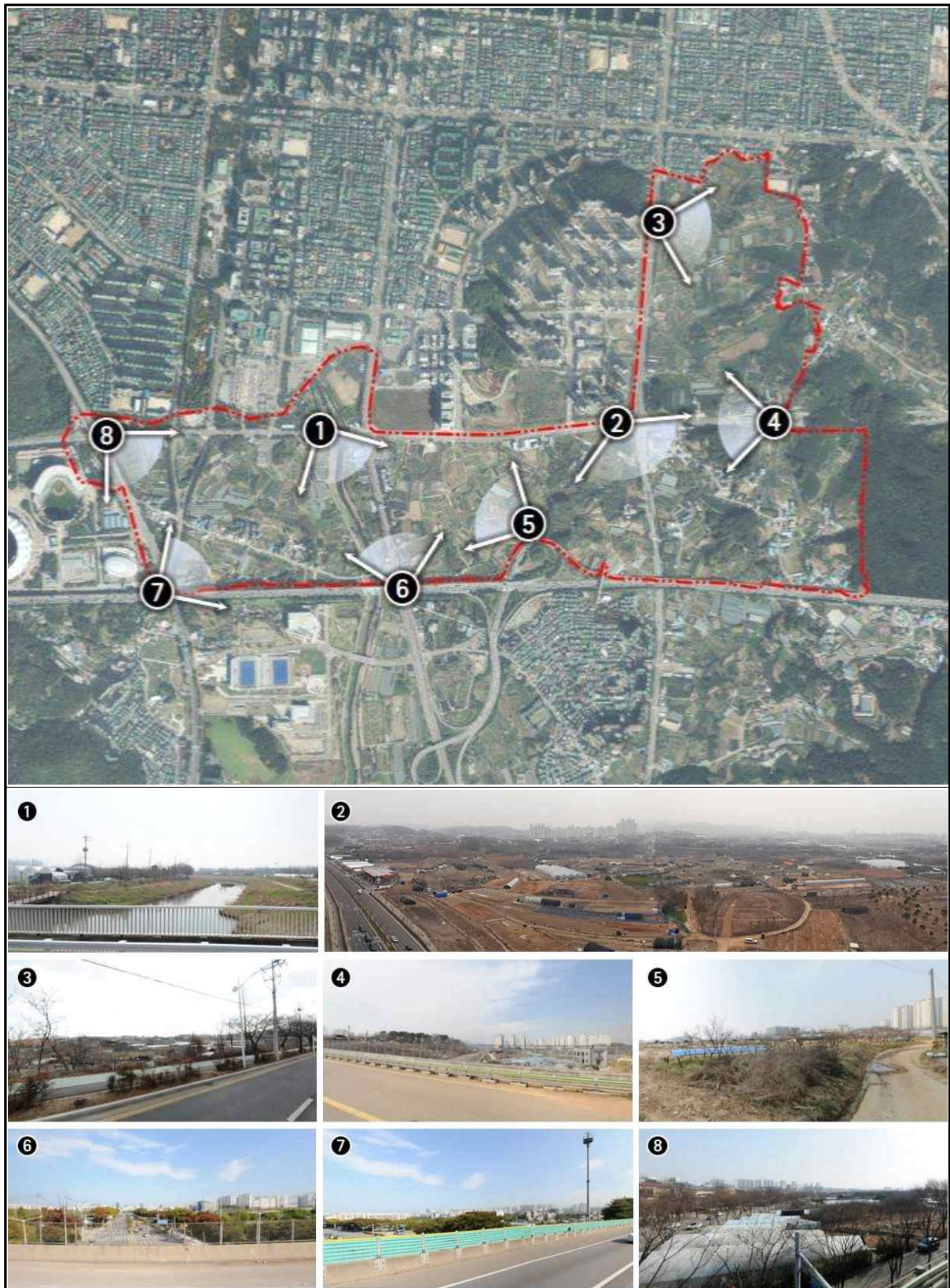
- 2022.02.14.~02.2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 항목 포함)
- 2022.08.01.~08.1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1.12.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10.30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고시
- 2024.07~08 :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4.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제출(예정)
- 2025.상반기 :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제출(예정)

1.4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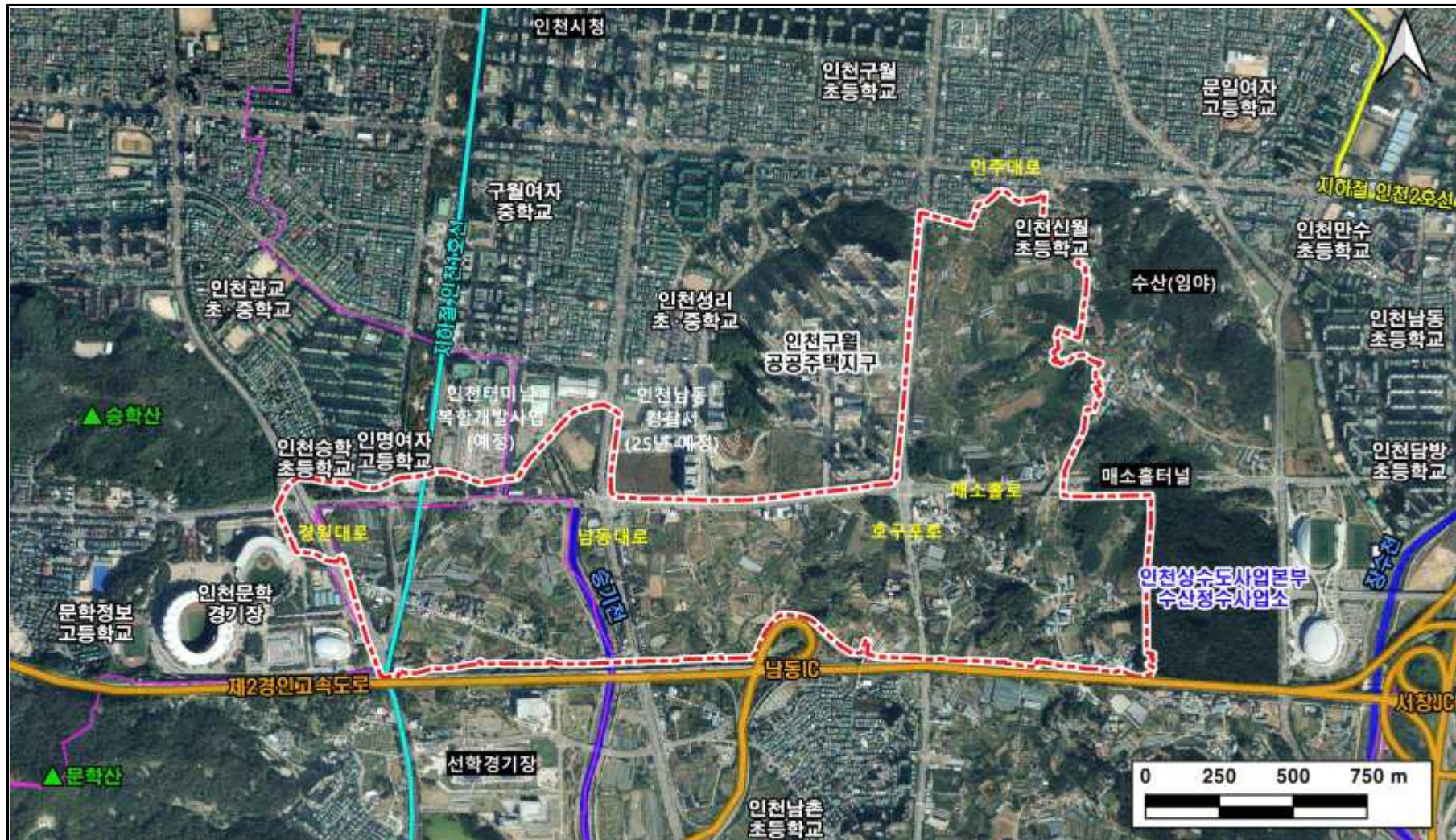
- 가. 계 획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촌수신동, 연수구 선학동, 마추출구 관교·문화동 일원
- 다. 사업면적 : 2,200,586㎡
- 라. 계획인구 : 39,000인(18,000세대)
- 마. 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 바.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 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아. 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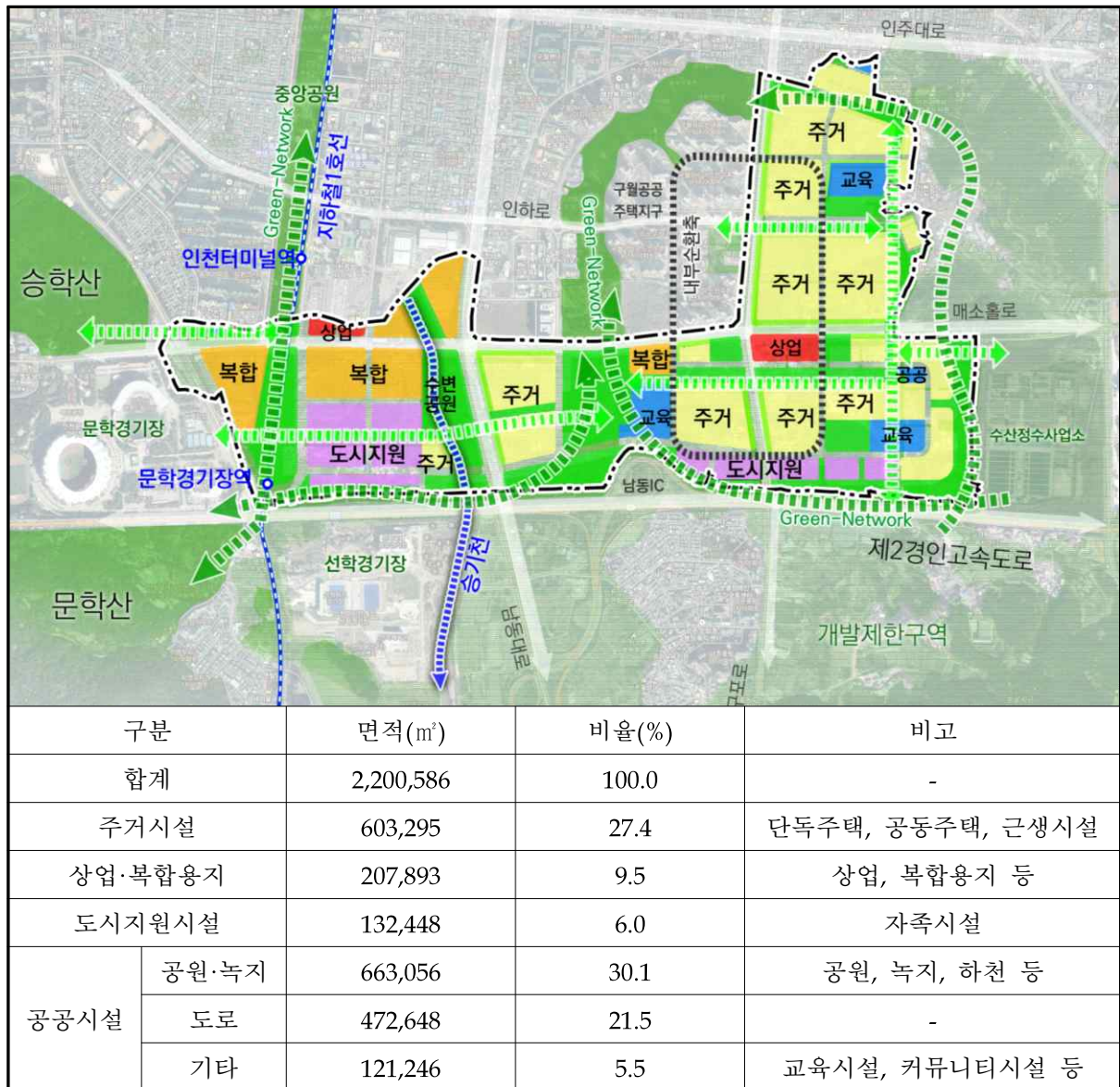


(그림 1-2) 사업지구 현황사진



(그림 1-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위성지도)

〈표 1.4-1〉 토지이용계획(안)



1.5 사업의 기대효과

- 본 계획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남동IC)와 면하며, 영동고속도로(서창JCT)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장수IC, 3km)와 인접하여 광역교통망 여건이 우수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하여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며, GTX-B(인천시청역) 신설 예정으로 서울과의 광역접근성 개선이 기대됨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19조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등 3인
 - 국토교통부, 관련 전문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024.07.29 ~ 08.05)
- 결정사항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 ○ ○	승인기관
1	위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2	위원	국립생태원 기후탄소연구팀	○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항목 선정

가.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선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3, 환경부」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표 2.2-1〉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결과 및 사유

분야	항 목	선정결과	사유
온실 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일반평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중점평가	○ 공사시 장비투입, 운영시 냉·난방에 따른 다량의 온실 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중점평가	○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일반평가	○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 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중점평가	○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평가	중점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 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2.2-2〉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온실 가스 감축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 공간적범위 -사업지구 ○ 시간적 범위 -평가서 작성시점	○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실가스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공간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시간적 범위 -공사시 -운영시(국가비전 목표시점 2050년)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원단위 기준을 선정한 후 인벤토리별 배출량 전망의 근거 설정, 목표시점의 배출원단위 산정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 인구 등 활용하여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공간적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시간적 범위 -공사시 -운영시(국가비전 목표시점 2050년)	○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적극 반영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건축물 적용, 녹색교통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확충,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적용, 토지 이용계획 등 ○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 감축 및 탄소 흡수원 확대방안 강구 ○ (온실가스 감축 관련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 여부 제시	

〈표 2.2-2 계속〉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30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분석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평가요인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기후인자별로 취약성을 신뢰도가 검증된 모델·모형으로 분석. 위험성은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산정 ○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수록된 설문조사 등 활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 및 방안 수립 -효과·비용·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판단 -예상되는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 마련 ○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을 예상 결과에 대해 제시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연관성,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제시	

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2.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제21조,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포함하여 함께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표 2.2-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관련법	내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초안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기후변화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요약본을 첨부하여 공고할 계획임
- 공람 기간 : 20~60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 등)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
-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 등에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초안을 비치하여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람 장소는 추후 협의할 계획임

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1)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초안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개최장소 : 설명회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

나) 주민설명회 생략

(1) 생략근거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정보통신망 게시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

가)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공청회 생략

(1) 생략근거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 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승인기관·협의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임

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